

#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

사규번호	규정 2012 - 2
담당팀	기획팀
제정일자	2012.03.23
개정일자	2025.07.18

## 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태영건설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3 조 (권 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,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소수주주 권자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## 제 4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## 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## 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로 위원회가 2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위원은 이사회에 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 7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 소집시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 8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

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# **제 9 조 (부의사항)**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**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**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**제 11 조 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# **제 12 조 (간사)**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맡으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**제 13 조 (부칙)**

- ①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25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